#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8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이상식·최민희·이병진

서미화 • 이언주 • 부승찬

박선원 • 민병덕 • 고동진

모경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 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2항 본문 중 "3년 이상인 것"을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또는 조합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3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44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5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5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60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64
15년 이상	100분의 68

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을 "제4호,"로, "단서는"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현행과 같음) 특별공제액)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 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한다-----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 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 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장기보유자산 또는 조합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 ⑦ (생 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 법) ① (생 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3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44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5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5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60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64
15년 이상	100분의 68

	<u>4</u>	~	<u>8</u>	(현형	ij z	13항투	나터	제7	,
	항기	마지	와	같음	)				
제	121	조(	비견	구지	네	대한	과	세방	
	법)	1	(현	] 행과	· 같	슬)			
	2								
									-
									-
									-
									-
									-
									-
									-
									_

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 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 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 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 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
<u>ম</u> ]4 <u>ই</u> ,
은 조 제3항은
③ ~ ⑥ (현행과 같음)